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일, 이창열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5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가. 제안이유

-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인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을 실현하고자 우리 군 학생의 창의·인성교육 진흥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명시 및 예산 지원(안 제5조)
- 지원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안 제7조)
-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홍보(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5. 17.)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4. 5. 3.
- 회부일자 : 2024. 5. 17.
- 상정일자 : 2024. 5. 17.

2. 제안이유

-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인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을 실현하고자 우리 군 학생의 창의·인성교육 진흥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
-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명시 및 예산 지원(안 제5조)
- 지원 사업의 위탁(안 제6조)
-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안 제7조)
-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한 홍보(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지자체가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진로교육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지자체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진로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평창군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사업의 범위 등)에서 우리 군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연계망 구축) 및 제8조(홍보)에서는 교육환경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창의·인성프로그램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창의·인성교육¹⁾ 진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권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1) 창의·인성교육이란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출도를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0).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창 열 의원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9
----------	-----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3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의원

1. 제안이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인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 양성교육에 부합하고자, 우리군 학생의 창의·인성교육 진흥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조례안의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4조)

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및 예산지원(안 제5조)

다. 지원사업의 위탁(안 제6조)

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계망 구축(안 제7조)

마.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계획 홍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진로교육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4. 4. 8. ~ 4. 29.(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4. 3. 26.~ 4. 5. 아래표 참고.

원안(의회)	검토안(인재육성과)	검토결과
<p>제5조(사업의 범위 등)</p> <p>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교육 및 체험 사업</p>	<p>제5조(사업의 범위 등)</p> <p>1. 문화·예술교육 및 그 체험 사업</p> <p>(사유- 문화예술의 범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p>수용하여 조례안 반영</p>
<p>제5조(사업의 범위 등)</p> <p>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 사업</p> <p>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p>	<p>제5조(사업의 범위 등)</p> <p>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진학특강 등 교육 사업</p> <p>5. 기초질서의식 함양과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사업</p> <p>(사유: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교육에 부합하고,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를 진학 및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p>	

평창군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등) ①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진학특강 등 교육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
 7.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연계망 구축) 군수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19.>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④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언론의 인성교육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2021. 12. 7., 2022. 9. 27.>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사업의 범위 등) ①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연락처	(033) 330 - 2504